#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14

발의연월일: 2022. 3. 30.

발 의 자:주철현·김두관·김승남

민형배 · 서삼석 · 우원식

위성곤 • 윤영덕 • 이개호

이원택・조오섭 의원

(11일)

#### 제안이유

최근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제기됨에 따라,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해기사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여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과 권한부여를 통해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선고 및 형의 확정사실 통보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나.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확고히하기 위하여 선박소 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실습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 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 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 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

- 의2, 제305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를 위반하여 징 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 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 지정

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 기간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 점검항목에 관한 사항
-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	
기사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
	2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u>&lt;신 설&gt;</u>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
	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
	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
	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
	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생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으로 면허를 받은</u> 경우에는 그	<u>당하는</u>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③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 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③ ~ ⑧ (현행과 같음)
-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형이 확 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 여야 한다.

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현장승선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 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 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 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 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 지정교 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게 제공 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 기간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 항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교원 등을 대상
  으로 한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에 관한 사항
-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 점검항목에 관한 사항
-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

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 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